##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연월일 : 2022. 3.

제 안 자:의회운영위원장

#### 1. 제안이유

마포구의회 의장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운영위원회 위원수와 일치하도록 보완하고, 표창에 따른 부상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더불어 관련 자구 등을 정비해 표창 제도와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표창대상자에 대한 부상 수여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제2항)
- 나. 제1공적심사위원회 인원을 6명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안 제13조제1항제1호)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선거법」 제112조

나. 기타

- 1) 개정 조례안: 붙임
-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포구의회에서 행하는"을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서 하는"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를 "표창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표창권자"를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표창방법)"을 "(표창방법 및 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

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로, "행할"을 "할"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에 표창대상자"를 "표창 대상자"로, "위한 위원회를"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의회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표창 대상자를 추천한 경우,"를 "추천한"으로,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제1공적심사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회사무국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등에 의해 추천된 표창 대상자의 경우, 표창 대상자"를 "등이 추천한 표창대상자와 의회사무국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 또는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제1조(목적) -----시 마포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 --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한다)에서 하는 ----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 마포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 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 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 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 한다)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원업무 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 있거나 각종 행사 등-----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 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게 수여하다. 제4조(표창권자) 표창권자는 서울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표창권자-----"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하는 -----. 1. ~ 5.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 제6조(상장 수여대상)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u> -- 각 호</u>-----는 경우에 수여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u>(표창방법)</u> 표창장, 상장 및 제8조<u>(표창방법 및 부상)</u> <u>①</u> ----

감사장은 <u>별지 제1호 및 제2호</u> <u>서식</u>에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 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u>자가</u> 사 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 창 대상자의 추천은 <u>의회 의원</u> (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회사 무국장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의 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u>행함을 원칙으로 하고</u>,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u>별지 제2호서식</u>
·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
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
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추서) <u>사람이</u>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제11조(표창시기)
<u>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u> -
할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u> 운영)</u> ① <u>표창 대상자</u>
<u> 위원회를 의회에</u>

- 1. 의원이 표창 대상자를 추천 한 경우,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 심사위원회를 두고, 제1공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해 6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 회 위원으로 한다.
- 2. 의회사무국 공무원과 공공기 관 또는 단체 등에 의해 추천 된 표창 대상자의 경우,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 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 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 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 위원과 팀장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 ② ~ ⑤ (생 략)
-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제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1.	 <u>추천한</u>
	<u>제1공적</u> 심사위원회의
	 <u>공공기관</u> <u>등이 추천한 표</u> <u>창대상자와 의회사무국 공무</u> 원
	 <u>위촉한다</u> ) ~ ⑤ (현행과 같음)
<u>1</u> 공	4조(이중 표창의 금지) 동일한 '적 또는 성적에 대해서는 이 '으로 표창할 수 없다.

		부	칙	
o]	조례는 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 [관 련 법 령]

##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3. 8. 13., 2017. 3. 9.>

#### 4. 직무상의 행위

-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